

2013.09^{vol.1}

LIFE TAX



세무사성열건사무소

대표세무사 성 열 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3가 46번지 E&C드림타워 321호

Tel 02-2628-0006 Fax 02-2628-5477

업무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등), 상속세, 증여세 등 절세상담 및 신고 장부기장 대리 및 기장지도 및 회계결산 업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조정 신고 업무 사업자등록신청, 법인설립 신고, 법인전환, 경영컨설팅, 기업진당 모든 국세 지방세 부담금의 불복(이의)신청업무



秋夕

이달의 세무일정

<	2013. 09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9.02(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주세 신고 납부
-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 증여재산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 상속재산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 양도소득(예정)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09.10(화)

- 원천세 신고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명세서 신고(원천공제외무자)

09.25(수)

- 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09.3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주세 신고 납부
- 증여재산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 상속재산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 양도소득(예정) 취득후 학자금 상환 신고 납부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
-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 종합부동산세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
- 종합부동산세 향교재단 등 과세특례신고



배워봅시다

■ 종합소득세 (aggregate income tax)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 개별소비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의 억제 및 재저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개별소비세로 과세되고 있다.

■ 레저세 (leisure tax)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란?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 12. 29 공포되어 200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호대상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대항력보장 대항력이란 건물주(임대인)가 바뀌어도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일치해야 하며 계약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고(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공매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일정보증금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경매가액의 1/3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료 인상 한도가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산정율도 15% 이내로 제한된다.



지역별 상가임대차보수법의 적용범위

지역	적용대상	최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4천 5백만원	1천 3백 5십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3천 9백만원	1천 1백 7십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3천만원	9백만원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2천 5백만원	7백 5십만원

☞ ① 보증금=월세×100, (보증금×12%)/12=월세

② 월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공급대가)로 한다.

관련사례

차임의 범위 차임의 범위에는 임차료만 포함되며 관리비나 주차료 등은 차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상가권리금도 보수받을 수 있는지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법과 무관한 것이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계약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한다.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대료 3회 연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8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제 14 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 년 보험료를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구성: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공급자단체(의약단체),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

복지부는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인상을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를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3.4월 평균보험료기준으로 산정

이번 보험료를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상급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13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의결되었다.

의료계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증도나 난이도가 다양하여 포괄수가제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그동안 준비상황 및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입 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자궁근종수술, 난소낭종수술 등)에 대해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자궁, 난소를 보존하는 시술이며, 가산방식은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용에 대하여 30% 가

산*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하여 자궁이나 자궁부속기의 전체 적출보다는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하여, 저출산 시대에 바람직한 의료 행태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하여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도 시행 전에 세분화하기로 하였다.

▶ 현재 11개 환자분류는 자궁과 부속기가 분리되어 16개로 세분화될 예정

의료계가 7개 질병군 포괄수거제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한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포괄수가 발전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하였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건정심은 두 차례 보고·논의(1.31, 3.29)된 바 있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방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 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 현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

▶ (시행시기)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경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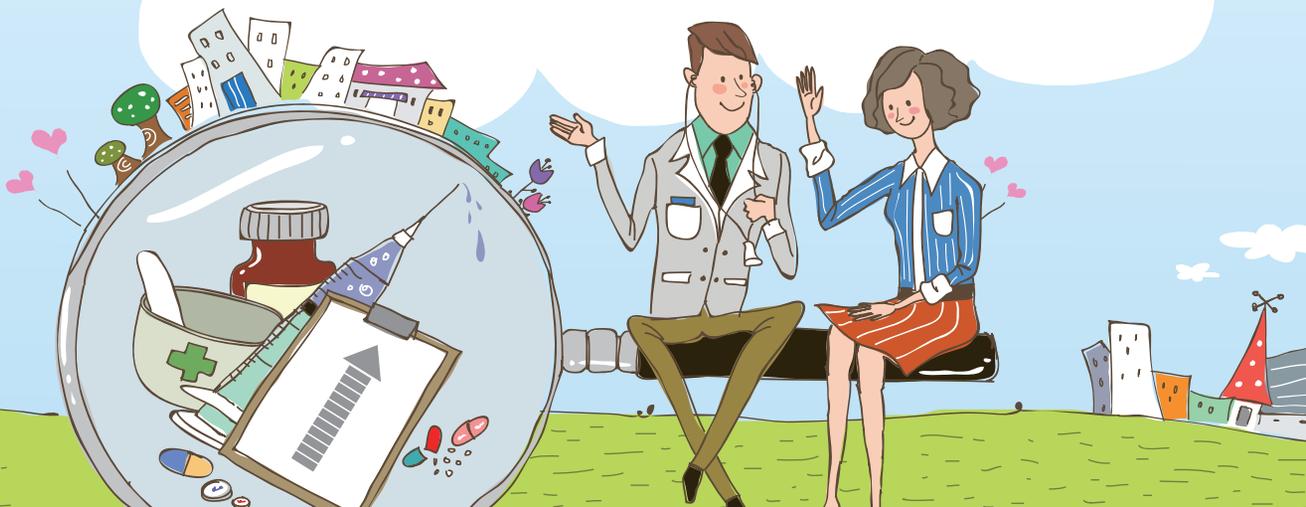
이러한 토요일 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며,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으며,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 포함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으며(~9월),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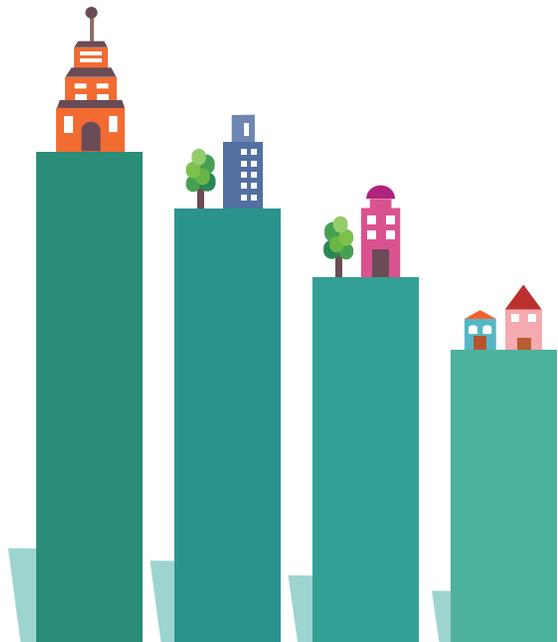
이에 따른 제도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과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였다(임대주택법 개정).

그 밖에도 이번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는 등 임차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



7.2%

인상 ↑

저소득 근로자 256만5천명 혜택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서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명절증후군 피부관리는 어떻게?

■ 기름진 음식은 여드름 촉진제

기름진 음식은 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DHT) 수치를 높여 여드름이 생기기 쉽게 한다. 평소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전, 유과, 갈비찜 등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 피부에 독 쌓는 과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다. 알코올은 피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수분 손실을 촉진시켜 피부를 거칠게 만든다.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주량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 소주 6잔 미만이다.

■ 얼굴은 깨끗이, 잠은 충분히

음식을 만드는 도중 얼굴에 튀 기름이나 땀이 모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노폐물을 씻어 내지 않으면 모공이 넓어지고 각질이 두껍게 쌓일 수 있으므로 귀찮더라도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자야 한다.

〈명절 피부 증후군을 이기는 5가지 방법〉

- 차로 장거리 이동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하고 화장은 최소화 한다.
- 주방과 야외에서 시달린 피부는 깨끗이 씻어주고 기초 화장품을 꼼꼼히 바른다.
-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색이 나빠지므로 충분히 잔다.
- 기름진 고기나 전류 대신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
- 주부습진을 예방하려면 맨손으로 물과 자극적인 음식을 만지지 않는다.



나초오믈렛 재료

양파 작은 것 1/2개, 마늘2쪽, 고추1개,
대파 약간, 파프리카, 감자1/2개
계란3개, 나초칩, 모차렐라 치즈(피자치즈)
채더 치즈(슬라이스 치즈) 1장, 케첩, 핫소스



재료손질하기

- 마늘 얇게 슬라이스
- 양파, 피망은 채썰어두기
- 고추, 대파는 잘게 썰어두기

1. 먼저 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를 얇게 썰어 살짝 볶아 익혀둔다. 간은 소금과 후추로 한다.
2. 기름을 두른 팬에 얇게 썬 감자를 올리고 그 위에 달걀 세 개를 부친다.
이때 필러를 이용해 감자를 얇게 깎아내면 손쉽게 얇은 감자를 손질할 수 있다.
3. 그 위에 익혀둔 채소와 파프리카를 올리고 케첩과 핫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올리고 뚜껑을 덮고 익기를 기다린다.
4. 잘게 부순 나초와 채더 치즈를 올려주면 스페니시 오믈렛 '나초 오믈렛'이 완성된다

나초오믈렛





제사상 차리기

제사 음식을 제수(祭需)라고 한다. 제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다르다. 제수를 제사상에 차리는 것을 진설(陳設)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체적인 제사 음식의 종류와 차리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각기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제주가 바라볼 때 오른 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 보통 5열로 상을 차리는데, 신위가 있는 쪽을 1열로 보면, 1열은 식사류인 밥, 국 등이 오르고, 2열은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 전 등이 오르고, 3열에는 그다음 될만한 부 요리인 탕 등이 올라가며, 4열에는 나물, 김치, 포 등 밑반찬류, 5열에는 과일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올라간다.

제사상 차리는 것에 관련된 격언

제사상 차리는 방법은 집안마다 다르고, 준 비한 음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제사상 차리는 것에는 관련된 격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고비합설 : 내외분일 경우 남자조상과 여자 조상은 함께 차린다.

시접거중 :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반서갱동 : 밥(메)는 서쪽이고 국(갱)은 동쪽이다. (산 사람과 반대)

직접거중 : 구이(적)는 중앙에 놓는다.

어동육서 :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동두서미 : 머리를 동쪽에 향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한다.

배북방향 : 닭구이나 생선포는 등이 위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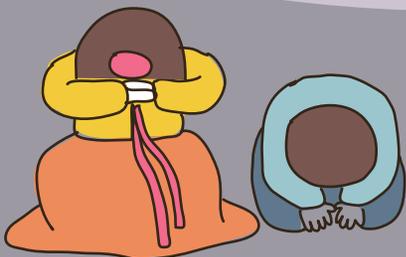
면서병동 : 국수는 서쪽에, 떡은 동쪽에 놓는다.

숙서생동 :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서포동해·해 : 포는 서쪽이고, 생선젓과 식혜는 동쪽에 놓는다.

홍동백서 : 붉은 색의 과실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

동조서을 : 대추는 동쪽이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내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04.01~04.25	01.01~03.31의 사업실적
			07.01~07.25	04.01~06.30의 사업실적
			10.01~10.25	07.01~09.30의 사업실적
			01.01~01.25	07.01~12.31의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01.01~ 12.31(1년)	다음해 01.01~01.25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 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05.01~05.31	01.01~12.31의 연간소득금액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투전기 설치장소 귀금속상 가구제조업 등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 요금 1개월의 입장인원 1개월의 판매금액 1개월의 재조장 반출가격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다음해 01.01~01.31		01.01~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07.10, 01.10	

세무사성열건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열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3가 46번지
E&C드림타워 321호
tel 02-2628-0006
fax 02-2628-5477

발행처  솔로몬북

문의 02-3665-8607

LIFE TAX

저희 도서출판 어울림·솔로몬북에서는 매월 세무경영정보지 LIFE TAX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LIFE TAX에는

- 매월의 세무일정 및 체크사항
- 주요 세무뉴스
- 절세가이드
- 세무관련 특별기획
- 주요 Q&A
- 생활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분량으로 부담없이 읽으실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거래처 홍보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LIFE TAX의 장점

1. 착한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세무회계전문 출판사의 노하우가 담긴 양질의 소식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알기쉬운 내용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볍게 읽기 좋은 세무정보과 생활정보로 구성되어 일반 거래처에서 읽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3. 개업 및 홍보효과 극대화

-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하시고 거래처확보 영업에 최고의 자료입니다.
- 기존 거래처 유지관리 및 세무회계 정보 전달

4. 약정 사은품 증정

6개월 약정시 『최신개정판 인건비와 4대보험실무(어울림)』

1년 약정시 『최신개정판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어울림)』

1부를 무료로 드립니다.

월간세무경영 제작대행 신청서

1. 업체정보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e - m a i l	
전 화		팩 스	
주 소			

2. 선택사항

발 행 기 간	201 년 월부터 개월
발 행 일 자	매월 25일 발송



6개월 약정시 **1부 무료증정**
『최신 개정판 **인건비와 4대보험실무**』
정가 50,000원



1년 약정시 **1부 무료증정**
『최신 개정판 **업종별 회계와 세무실무**』
정가 90,000원

발 행 부 수	100부 <input type="checkbox"/>	150부 <input type="checkbox"/>	50부 추가마다 1만원씩 증가
대금(VAT 별도)	월 7만원	월 9만원	
선 택 사 항	봉투 제작시 기본 500장당 5만원 추가 (선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약정기간은 6개월, 1년이며 중도해약시 증정도서의 정가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3. 첨부서류 또는 파일(herbk2139@naver.com)

1면 제작용(사진, 경력 및 학력, 인사말, 업무안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월간세무경영 **LIFE TAX** 제작대행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작대행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4 이노플렉스 707호
솔로몬북 대표이사 이 은 경

문의 02)3665-8607 팩스 02)3665-8608 샘플보기 www.aubook.co.kr, www.sosbook.co.kr

계좌번호 기업은행 : 591-001521-02-017 예금주 : 이은경(솔로몬북)